

(2009.11.16 전면개정, 2010.9.2 개정, 2010.10.25 개정, 2011.7.28 개정, 2012.03.08개정, 2013.09.26개정, 2014.10.31개정, 2015.01.21개정, 2015.02.24개정, 2015.06.15개정, 2015.07.20개정, 2015.11.16개정, 2016.03.23개정, 2016.06.27개정, 2017.03.27개정)

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*

* 본 설명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본 설명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,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등 관계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.

목 차

I.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.....	1
II.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.....	4
1.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.....	4
2.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.....	7
2-1. 적격개인투자자제도.....	7
2-2. 수탁 및 매매제도.....	8
2-3. 증거금제도.....	10
2-4. 정산, 결제, 인수도.....	12
3.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.....	14

I.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

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,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귀하의 투자목적·자금규모·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>

- √ 투자경험, 투자목표,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?
- √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?
- √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?
- √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?
- √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?

1.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**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**할 수 있으며, **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**할 수도 있습니다.
2. 한국거래소(이하“거래소”로 함)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응증권의 대응가격 등의 변동으로 **위탁증거금이 부족**하게 되는 경우 또는 **위탁증거금이 인상**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(이하 “회사”로 함)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**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**하여야 합니다.
3. **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**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**귀하의 미결제약정**,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**대응증권, 외화 또는 외화증권**(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, 이하 같음)의 **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**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**손실은 귀하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4. 귀하의 계좌에 대해 **장중 추가예탁 부과**가 결정되면 귀하가 **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**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, 포지션 제한 등 **제도 변경**이 있을 수 있으며,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

하여야 합니다.

6.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**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**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.

※ 가격제한폭,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7.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**통지된 내용(잔액·잔량 등의 사항)은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8.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**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.**
9. 거래소의 회원인 **회사의 결제불이행, 파산 등의 경우**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**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**되거나 **반환이 지체**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.
10.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,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.
 - 콜옵션 매수자 :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
 - 콜옵션 매도자 :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
 - 풋옵션 매수자 :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
 - 풋옵션 매도자 :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
11.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**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** 수 있습니다.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
12.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**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**할 수도 있습니다.
13. **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** 수 있습니다.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, **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**될 수 있습니다.
14.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**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**할 수도 있습니다.

15.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(내가격옵션) 옵션가격(프리미엄)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(외가격옵션) 옵션가격은 낮습니다. 만일 귀하께서 단지 **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**하신다면 **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**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16.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(V-KOSPI200선물)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**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**을 가지므로, 귀하께서는 V-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**명확히 이해**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
17.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,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, **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**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·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.

아울러,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II.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

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,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

(1) 개념

- ▶ 파생상품이란 주식·채권·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.
- ▶ 장내파생상품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,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, 장내파생상품 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.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,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.

※ 장외파생상품 : 선도, 스왑, 장외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

(2)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

- ▶ **기초자산** :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,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(코스피200), 채권(국채), 주요국 통화(미국 달러, 유로 등), 상품(금, 돈육 등)이 있습니다.

<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>

구분	상품내역
주가지수상품	코스피200선물, 코스피200옵션, 섹터지수선물, 코스탁150선물 등
변동성지수상품	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
개별주식상품	개별주식선물, 개별주식옵션
채권/금리상품	3년, 5년, 10년 국채선물
통화상품	미국달러선물, 미국달러옵션, 엔·유로선물 등
Commodity상품	금선물, 돈육선물

- ▶ **계약단위** :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,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.
- ▶ **가격표시방법** :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, 포인트(코스피200선물), 액면100원당 원화(국채선물), US \$1당 원화(미국달러선물)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▶ **결제월 및 최종거래일** :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

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을 정하고 있으며,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월(3,6,9,12월)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각 결제월마다 파생상품 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,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

- ▶ 일일 가격제한 :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 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,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(3단계)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>

주식파생상품		순차적 적용		
		1단계	2단계	3단계
지수상품	코스피200선물·코스닥150선물·섹터지수선물	±8%	±15%	±20%
	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	±30%	±45%	±60%
주식상품	주식선물	±10%	±20%	±30%
	주식옵션			

※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,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기준종목 가격급변 :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·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**

*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(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)

**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·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,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(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·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,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)

- ② 주식CB발동 :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(CB, Circuit Breakers)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*까지 확대**(단,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)

* 주식시장이 8%~15%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, 15%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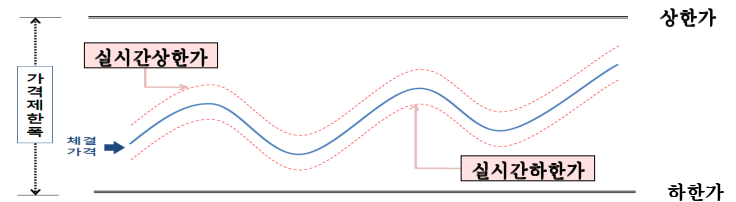
** 코스피200선물(코스닥150선물) 하락방향,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,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,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

<예시>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

- ◆ 가격급변의 경우 : 선물 기준종목이 13:05: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:10: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:09:00초에 필요적중단(주식CB)이 발생하여 13: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⇒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 확대
- ◆ 주식CB 발동 경우 :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%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%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⇒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 거래 재개 시점에 20%로 확대(지수 17% 하락 → 파생 가격제한폭 -20%)

- ▶ 이 외에도,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(tick)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(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내에서만 적용)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참고> 실시간가격제한 제도



☞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(직전 약정가격±α)를 설정하고,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

- ◆ 적용상품 : 코스피200선물, 코스피200옵션, 주식선물(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), 3년국채선물, 10년국채선물, 통화선물
- ◆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,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
- ◆ 주요 장내파생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은 동 설명서의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예시> 코스피200선물의 주요명세

- ※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250.00일 경우,
 - 계약단위 : 250.00(코스피200선물가격)×25만원(코스피200선물 거래승수)=6,250만원
 - 가격표시방법 : 250.00포인트(코스피200지수 가격표시방법 준용)
 - 결제월 : 3, 6, 9, 12월 (상장결제월 : 3년 이내 7개 결제월)
 - * 11.30 기준 상장월 : 12월물, 익년도 3월물, 6월물, 9월물, 12월물, 익년도 6월물, 12월물
 - 최종거래일 :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
 - 최소호가단위 : 0.05포인트(계약당 손익변동금액 : 0.05×25만원=12,500원)
 - 1단계 가격제한 : 기준가격이 250인 경우 상한가 270, 하한가 230 (기준가격 대비 상하 ± 8%)

(3)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특징

- ▶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 **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**(거래대상, 거래단위, 결제월, 가격표시방법, 최소호가단위, 가격제한폭 등)되어 있고, ② **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(CCP)**가 이루어지며, ③ **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,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**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2.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

2-1. 적격개인투자자제도

(1) 개요

- ▶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적격개인투자자제도는 **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*에 한하여 파생상품시장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**하는 것을 말합니다.

* 개인투자자 :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(투자경험 1년이상,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 포함)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법인,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자

(2)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단계적 허용

- ▶ **[1단계] 사전교육 20시간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일정액 이상 예탁**한 경우 단순한 구조의 선물상품의 거래 및 옵션매수가 가능합니다.

※ 단, ① 제도시행일('14.12.29)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기존투자자 중 거래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② 협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(자격시험 합격, 업계 종사자 등)에는 사전교육 또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.

(☞ 세부 예외적용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)

- ▶ **[2단계] 1단계 거래경험 1년이상 및 매 거래일 기준 직전 1년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** 경험이 있고, 사전교육 10시간 이수 후 **기본예탁금을 예탁**한 경우 **옵션매도, 변동성지수선물**을 포함한 모든 장내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합니다.

		선물상품	옵션 및 옵션관련 선물
투자가능 자산 가액	사전지식 및 투자경험	① 사전교육(20시간, 금융투자협회) ② 모의거래(50시간 이상, 거래소)	① 사전교육(10시간, 금융투자협회) ②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 경과 ③ 1단계 거래경험(10거래일 이상 미결제약정 보유)
	위험감수능력(기본예탁금)	1단계 : 2,000만원~3,000만원 2단계 : 3,000만원~5,000만원 3단계 : 5,000만원 이상	1단계 : 3,000만원~5,000만원 2단계 : 5,000만원~10,000만원 3단계 : 10,000만원 이상
투자가능 상품		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상품 및 옵션매수	모든 선물·옵션 거래

- * 해당상품 최초거래시 2단계 이상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적용(단, 타 증권회사에서 1단계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등급 인정 가능)
- ** 미니금선물, 돈육선물은 50만원

* 투자자별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은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

2-2. 수탁 및 매매제도

(1) 주문

- ▶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**지정가주문, 시장가주문, 조건부지정가주문, 최유리지정가주문**이 있으며, 이외에도 **주문에 조건(전량충족조건, 일부충족조건)**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.

- ▶ 특히, **주식파생상품**에 대해서는 일중 상·하한가 제한으로 **시장가호가**가 불가피하게 상·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, **가격제한폭 확대시** 접수된 **시장가호가**가 **가격**을 **재의제**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.

<예시>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

- ♦ **매수지정호가**가 '1단계 상한가'에 있는 상태에서 **매수시장가가 접수**되면 해당 시장가는 원래 '1단계 상한가+1틱'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'1단계 상한가'에 의제
⇒ 이 상황에서 **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**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"최우선매수호가(확대전 상한가)+1틱"으로 **재의제** 후 호가처리됨
- ♦ **직전체결가격**이 '1단계 상한가'이고, 최우선매수호가 없는 상태에서 **매수 시장가호가**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'1단계 상한가'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
⇒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되더라도 **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**

- ▶ 투자자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, 주문별·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**주문 입력을 제한**하고 있습니다.

- ① **유동성이 낮은 종목**(원월물, 선물스프레드거래, 주식선물 및 옵션거래, 돈육선물) 또는 **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***에 대하여 **시장가주문, 조건부지정가주문,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(즉, 지정가주문만 허용)**

*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(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)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

- ② **단일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선물스프레드주문 제한**
- ③ **종가단일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**

(2) 거래의 체결

- ▶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

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**개별경쟁거래방법(단일가거래*, 접속거래)**으로 이루어집니다.

* 단일가거래 : ① 최초약정가격(거래개시전 60분간), ② 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, ③ 최종약정가격(거래종료전 10분간)

▶ 단, **협의대량거래,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(EFP),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**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,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**협의거래제도를 적용**하고 있습니다.

(3) 거래시간

▶ 정규거래시간은 **최종거래일의 도래 여부에 따라 구분**됩니다.

- ① **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** : 9:00 ~ 15:45 (돈육선물은 10:15 ~ 15:45)
- ② **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** : 주식상품·금선물시장의 9:00~15:20, 금리·동화상품시장의 경우 9:00~11:30 (변동성지수선물은 9:00~15:35, 미국달러옵션시장은 9:00~15:30, 돈육선물은 10:15~15:45)

※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의 **글로벌시장(CME연계)** 거래시간은 **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**입니다. (단,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CME 또는 한국거래소의 휴장일에는 거래불가)

(4) 거래의 중단

▶ 거래소는 **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**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**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**할 수 있습니다.

▶ 거래소는 **주가지수가 급변**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**서킷브레이커(CB, Circuit Breakers)***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주식시장의 CB 발생시 **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(스프레드 거래 포함)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**되며,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**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**됩니다.

*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써,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(8% 이상 하락·1분 지속·20분 중단·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), 2단계(15% 이상 하락·1분 지속·20분 중단·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) 및 3단계(20% 이상 하락·1분 지속·중단 및 종결)로 구분하여 발동

▶ 거래소는 **선물시장이 급변**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**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써 사이드카(Side Car)***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

*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% 이상(코스닥은 6% 이상)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,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

2-3. 위탁증거금제도

(1) 기본예탁금

▶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**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**을 말하며, 위탁자는 **현금, 대응증권, 외화 또는 외화증권**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.

(2) 위탁증거금의 예탁

▶ 고객은 회사에 **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**해야 합니다. 이 때 위탁자는 **현금, 대응증권, 외화 또는 외화증권**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▶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받는 **사전위탁증거금**과 정규거래시간의 종료후에 예탁받는 **사후위탁증거금**으로 구분됩니다.

- ① **사전위탁증거금** :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
- ② **사후위탁증거금** :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,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(적격기관투자자)에 한하여 적용 가능

(3) 위탁증거금의 지급·충당

▶ 회사는 위탁자의 **예탁총액***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**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**하거나 **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**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는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현금, 대응증권,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 예탁된 현금과 대응증권의 대응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

(4)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

▶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이란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**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지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**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▶ 추가위탁증거금은 **추가예탁 부과여부**를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**일별 추가예탁과 장중 추가예탁**으로 구분됩니다.

(4-1)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

▶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**예약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거나 예약현금이 유지현금
예약필요액보다 적은 경우**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약하여야 합니다.

▶ **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약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2시**입니다. 단, 회사는 위
탁자의 투자목적, 투자경험, 자산 및 소득수준, 신용상태,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
황 등에 비추어 **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예약시한을 앞당길 수** 있습
니다.

(4-1)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약

▶ **정규거래시간 중 매정각(9시1분, 10시~14시, 15시는 제외) 시점에 코스피200이 전일종
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% 이상 변동할 경우, 예약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
보다 적은** 위탁자는 **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약**하여야 합니다.

*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 계좌 중 모든 위탁계좌에 적용됩니다.

▶ **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약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(회사가 정하는 시간)***입
니다. 단, 회사는 위탁자 파락사항 등을 고려하여 **다음 거래일 호가접수시간의 개시
전까지 추가예약시한을 연장**할 수 있습니다.

추가증거금 예약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에 따라 추가증거금 발생일의 익영업일 12시
이내로 한다.

▶ 회사는 **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** 위탁자에 대하여 **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
가 계속 유지**되는 경우 **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**해야
하며, 회사의 판단에 따라 **기체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**할 수 있습니다.

* 추가예약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 거부 요건에 해당되
기 때문에, 만약 장중 추가예약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약을 통지하기 전
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▶ 그러나,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약을 통지받은 후에 **미결제약정 해소 또는 시장상황의
변동 등으로 예약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**하는 경우
등에는 **추가예약이 해제**될 수도 있습니다.

<예시>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

※ 코스피200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이 6%일 경우,

- (상황 A) 9시1분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-3.5% 변동 : 장중 증거금 추
가예약 부과요건 미충족 →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미산출
- (상황 B) 10시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±4.8%(=6%*0.8) 이상 변동
했다면 장중 증거금 추가예약 부과요건 충족

- 위탁자 계좌별로 “예약총액<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”이면 장중 추가예약 부과대상에 해당
- “장중위탁증거금액-예약총액”에 해당하는 금액(즉, 부족액) 이상을 회사가 정하는
시간(당일 또는 익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)까지 **추가 예약**
- 장중 추가예약 미이행시,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주문에 대한 수탁이 거부됨
- 만약 전일 장종료후 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**금일 10시에 장중추가위탁증
거금이 발생**하였고 12시 회사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어 장중 추가
위탁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, 동 계좌에 대해서는 **장중 추가예약 해제 가능**

<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 80% 이상 변동시 추가예약 변동 예시>

구분	증거금	조치사항
9시	예약총액 2,500만원	조치없음
9시1분*	위탁증거금액 4,500만원,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3,000만원	추가예약액 2,000만원 부과 통지
9시30분	고객이 500만원 납입, 예약총액 3,000만원	조치없음
10시*	위탁증거금액 4,000만원,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2,800만원	추가예약 부과 해제 가능

*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시각(매정각, 단 9시는 9시1분)

(5) 예약불이행시 조치

▶ 위탁자가 **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약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**, 회사는 선택한 권리
자의 주의로써 **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
수를**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약받은 **대용증권,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**할 수 있습니다. 그러으
로, 위탁자는 **예약시점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**해야 합니다.

2-4. 정산, 결제, 인수도

(1) 선물거래의 결제방법

(1-1) 일일정산

▶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**정산가격으로 위
탁자와 정산**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글로벌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글로벌거래의
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.

▶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**당일차금*과 갹신차금****을 **결제금액으로 수수**합니다.

* 당일의 약정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

액

**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

(1-2) 최종결제

▶ **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.**

- ① **현금의 수수** : 최종결제차금*을 수수
- ② **기초자산을 수수** :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(거래소 규정 참조)

*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(현물가격)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

(2) 옵션거래의 결제방법

(2-1) 옵션대금의 수수

▶ 회사와 위탁자는 **옵션대금*을 결제금액으로 수수**합니다.

*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

(2-2) 권리행사 신고 및 결제

▶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**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 권리행사의 신고**를 하여야 합니다.

▶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**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은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**으로 봅니다.

▶ 회사와 위탁자는 **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** 합니다.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**권리행사차금*을 수수하는 방법**으로 하게 됩니다.

*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

(3) 결제시한

▶ 회사와 위탁자 간의 **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**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**로 합니다. 단, 통화선물거래의 경우에는 **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**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.

*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, 갱신차금, 옵션대금, 최종결제차금,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 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

**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

▶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**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**

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.

3.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

※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**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참조**하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>

구분	코스피200선물	코스피200옵션	국채선물	미국달러선물	주식선물
거래단위	선물가격 × 25만원	옵션가격 × 25만원	액면1억원	1만달러	선물가격 × 10원
결제월 및 거래기간	3,6,9,12월 (최장 3년, 7개결제월)	매월 (최장 3년, 11개결제월)	3,6,9,12월 (최장 6월, 2개결제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년이하 결제월: 매월 ▪ 1년초과 결제월: 3,6,9,12월 (최장 3년 20개 결제월) 	3,6,9,12월 및 그밖의월중2개 (최장3년 9개 결제월)
최종거래일	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	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	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	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	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
가격표시방법	코스피200선물 수치(포인트)	프리미엄 (포인트)	액면 100원당 원화(백분율방식)	US \$1당 원화 (원/달러)	주식선물가격 (원)
최소호가단위	0.05포인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0.05포인트 (프리미엄 100이상) ▪ 0.01포인트 (프리미엄 100미만) 	0.01포인트	0.1원	1원~1,000원 * 기초주권의 상장 시장 및 후 가가격의 수 준에 따라 상이
최소가격 변동금액	12,500원 (0.05×25만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2,500원 (0.05×25만원) ▪ 2,500원 (0.01×25만원) 	10,000원 (0.01×0.01×1억 원)	1,000원 (0.1원/달러× 1만달러)	10원~10,000원 (*1원~1,000원 ×10원)
일일가격제한폭 (기준가격 대비 상하)	±8%→±15%→ ±20%(정규거래) * 글루브거래는 ±5%	±8%→±15% →±20%	±1.5%(3년물), ±1.8%(5년물), ±2.7%(10년물)	±4.5%	±10%→±20% →±30%
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*의 가격변동률	±1%	±2%	±0.5%(3년물), ±0.9%(10년물) * 5년물은 미적용	±1%	±3% 또는 ±5% * 기초주권이다 상이 거래소규정 참조

* 실시간상·하한가의 범위 : 직전약정가격±가격변동폭
(⇒가격변동폭은 각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, 자세한 산식은 거래소 규정 참조)